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7.4.19(수) 17:00

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임병운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4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4월 14일

3. 제안 이유

- 「식물방역법」에 따라 농작물병해충 예찰·방제단의 구성·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충청북도 농작물병해충 예찰·방제단 설치와 구성에 대한 규정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나.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임무 규정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다. 식물방제관의 권한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교육에 대한 규정(안 제7조 ~ 안 제9조)
- 라. 시·군 농작물병해충 예찰·방제단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지원 규정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'은 「식물방역법」에 따라 농작물병해충 예찰·방제단의 구성·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함.